

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

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. 12. 27

국토교통부장관

1. 변경 배경 및 목적

-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('23.8)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고시('24.11) 등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('22.8) 이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함

2. 계획의 특성

가. 내용적 범위

- 용산공원 조성의 종합적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
- 토지이용·교통·경관·환경 등의 기본 정책
- 역사·보훈·문화·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에 관한 기본 방향
- 공원 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
- 재원조달 및 복합시설조성사업 수익금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
- 그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효율적 조성, 관리에 필요한 사항

나. 시간적 범위

- 현재부터 용산공원 조성 공사 완료시기인 N+7년까지(N=용산기지 반환 완료 시기)

다. 공간적 범위

-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용산공원정비구역(용산공원조성지구, 복합시설조성지구, 공원주변지역)

3. 주요 변경내용

가.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입체적으로 연결

-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녹지로 연결하여 남산부터 한강까지 녹지축 확장
- 용산공원-용산역-국제업무지구의 지하부를 아케이드로 연결하여 광역교통 이용객의 방문 편의 제고
-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국제업무지구-공원입구-공원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(바이모달트램, 고무차륜AGT, 모노레일 등) 도입 검토

나. 주변지역, 산재부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

- 용산국제업무지구, 용산게이트웨이 개발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계획·사업 현황 업데이트
- 복합시설 조성지구(산재부지) 관련 사업 현황 업데이트

다. 공원 기본구상 및 시설물·프로그램 계획 등에 국민·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

- 공원 기본 구상도에 녹지축 연결, 보훈 기능 추가 내용 반영

- 발굴조사 외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적지에 대해서도 복원 및 재현 방안 마련
- 임시개방부지 유지·관리·운영 계획에 타부처 사업도 포함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 추진
- 舊방사청부지 내 주요 존치건물을 문화·예술 프로그램 외에 역사·보훈 프로그램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
- 전쟁기념관 기본 구상에 용산공원에 조성될 보훈상징공간과 전쟁기념관을 연계하기 위한 기본 방향 설정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전문 참조

-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정책자료/법령정보/훈령·예규·고시란에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문 및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전문 게재